

셀트리온, 공매도 금지일에도 25만여 주 공매도…허울뿐인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효과 있나?

파생상품(ETF, ELW) 등의 헤지거래는 예외적 공매도 허용, 사실상 '유명무실'

10월 지정된 6개 종목 중 5개가 공매도 발생…한국거래소, 공시 내용에 예외조항 등 미기재로 투자자 오인 자초

10월 기준 공매도거래 제한일 공매도 거래현황(출처:공매도 종합포털)

종목명	공매도거래 제한일	당일 공매도 거래	공매도 비중
셀트리온	2017년 10월18일	250,164주	5.56%
로엔	2017년 10월12일	817주	2.42%
셀트리온제약	2017년 10월11일	636주	0.01%
웹젠	2017년 10월11일	757주	0.15%
유진테크	2017년 10월11일	480주	0.17%
와이디온라인	2017년 10월10일	0주	0%

코스피 이전상장을 확정지은 셀트리온이 '공매도'로 인해 또 한 번 들끓고 있다. 이번에는 “불법 공매도” 논란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지난 17일(화) 공시를 통해 셀트리온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18일(수) 1일 간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에서 동 종목을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코스피 이전상장을 확정지은 지난 달 29일 이후, 셀트리온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18일(수) 장중 20만원을 돌파하는 등 66.89%의 상승을 시현하였다. 그러나 공매도 또한 증가하여, 17일(화) 기준 직전 40거래일 동안 셀트리온 전체 주식 거래량(5669만1784주)에서 공매도 거래량(294만6671주)이 차지한 비중은 5.2%였고,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약 752억 원) 또한 직전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약 93억 원)을 5배 이상 초과하였다. 이 결과로 공매도 과열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인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 5%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하여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됨으로써, 18일(수) 하룻동안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참고 :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의 경우 ▲공매도 비중 12% 이상,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하거나 ▲주가하락률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 ▲공매도 거래대

금 증가율 5배 이상,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 5%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코스닥 시장에만 적용)하는 경우 지정된다.)(근거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2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8조의5)

그러나 18일(수) 장 종료 후 매매동향을 지켜본 셀트리온 주주들은 또 한 번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규정대로라면 “0”이었을 공매도가 250,164주(5.56%)로 집계되었기 때문. 금액으로 따지면 약 504억 원 가량의 금액이 공매도 금지 제도를 위반한 “불법 공매도”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나 공매도가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전유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금지될 것으로 여겼던 공매도가 버젓이 발생한 사실을 두고 개인투자자들의 허탈감과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 당장 이번 코스피 이전상장을 이끌었던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은 청와대를 비롯하여 국회정무위원회, 국민신문고,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국무총리비서실 등을 통해 민원제기 등 구체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주주는 미국 증권감독위원회(SEC)에 동 건을 민원제기하여 금융/경제범죄 관련 기소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거나 해외 투자자에게 셀트리온 공매도 세력의 실태를 고발하고 있는 상태다.

물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에도 예외조항이 있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따르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① 주식시장 유동성공급자(LP)호가 ② 주식시장 시장조성자(MM)호가 ③ 증권상품(ETF-ETN.ELW) 유동성공급자(LP)의 헤지거래호가 ④ 파생상품 시장조성자(MM)의 헤지거래호가를 대상으로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통해서 당일에도 공매도가 이뤄졌다면 “불법 공매도”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런 예외적인 공매도 허용 자체가 사실상 ‘공매도 금지’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증시 한 관계자는 “유동성공급자와 시장조성자에게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한 것은 사실상 이들을 통해 언제든지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할 수 있어 ‘유명무실’한 허울뿐인 제도라는 것을 알리는 것 뿐”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셀트리온을 포함하여 10월에 공매도 금지로 지정된 6개 종목 중 와이디온라인을 제외한 5개 종목이 공매도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모호한’ 공시 내용도 이러한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공시는 한국거래소에서 해당 종목에 공시를 하는데, 공시 내용에 이러한 예외조항을 알리는 문구는 전혀 없어 투자자로 하여금 ‘모든 주체가 공매도를 전혀 할 수 없다’고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한 개인투자자는 이 점에 대하여 “보통 보험이나 각종 투자약관에도 예외 및 주의사항 등을 빼곡히 넣어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데, 한국거래소의 이러한 공시내용은 투자자를 ‘속였다’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거래자에 대한 조사 및 규제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도마

에 오르고 있다. 셀트리온의 한 개인투자자는 “규제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처벌한다 하더라도 과태료 수준이 최대 1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기관, 외국인 투자자의 자산 규모를 고려했을 때 언제든지 과태료를 감수하고 마음껏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시각을 시장에 심어주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다른 투자자 또한 “지금까지 금융당국에서 세웠던 공매도 공시제 등 각종 공매도 규제 제도는 모두 엉터리”라며, 한미약품과 같은 불법 공매도 행위가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상규명도 못하고 흐지부지 종료되었다는 점에서, “과연 금융당국이 공매도 발생주체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색출해 낼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자체가 의문”이라며, 현 금융감독 시스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피력하였다.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은 “셀트리온 코스피 이전상장을 막고자 갖가지 당근책만 제시했던 거래소가, 근본 원인이었던 공매도 규제에는 너무나 소극적이다”라며,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이번 대량 공매도를 누가 했는지, 금융당국은 이번 건의 불법 여부를 반드시 색출하여 규명하여야 할 것”이라며 끝까지 조치 결과를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공매도 금지종목 지정횟수만 가지고 제도 성과를 논하며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공매도 금지일에 공매도가 발생한 것에 근본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불법 공매도를 완전히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우간다보다 못한 금융시스템”이라는 오명을 벗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